

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아예 건조가 불가능하였다라는 응답자도 11% 나 되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환기도 잘 되지 않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현재의 감방의 구조를 고려할 때 재소자의 피부병, 기관지 질환 등의 질병이 유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최소한 주 1회 이상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류 및 침구

1) 국제기준

(1) 의류의 지급

국제기준은 피구금자에게 단정한 용모와 자존심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당한 의류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류를 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변도 허용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17조 ①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⁶⁾

(2) 침구의 지급

국제기준에서는 피구금자에게 지급되는 침구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 관습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급은 개인용이

6) 17 ① Every prisoner who is not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shall be provided with an outfit of clothing suitable for the climate and adequate to keep him in good health. Such clothing shall in no manner be degrading or humiliating.

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유럽규칙' 제24조 모든 피구금자는 지방 또는 국가의 관습에 따라 개인용 침대 및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교환되는 개인용 침구가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⁷⁾

(3) 의류의 위생

국제기준은 지급되는 모든 의류가 위생적이며 청결하여야 하고, 좋은 상태로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탁에 대한 권리와 교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럽규칙' 제22조 ②항 의류는 청결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제23조 시설에의 수용에서 각 피구금자의 의류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⁸⁾

(4) 침구의 위생

국제기준은 개인용 침구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위생과 청결, 교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19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7) 24.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with a separate bed and separate and appropriate bedding which shall be kept in good order and changed often enough to ensure its cleanliness.

8) 22 ②. All clothing shall be clean and kept in proper condition. Underclothing shall be changed and washed as often a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hygiene.

23. On the admission of prisoners to an institution, adequate arrangements shall be made to ensure that their personal clothing is kept in good condition and fit for use.

맞추어 개별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⁹⁾

(5) 예외적인 의류의 착용

국제기준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기 의류나 별도의 의류 착용을 인정한다. 따라서 착용하게 되는 의류는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의류여야 하며, 청결성과 적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17조 ③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제18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¹⁰⁾

(6) 미결수용자의 의류 착용

국제기준은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9) 19. Every prisoner shall, in accordance with local or national standards, be provided with a separate bed, and with separate and sufficient bedding which shall be clean when issued, kept in good order and changed often enough to ensure its cleanliness.

10) 17 ③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never a prisoner is removed outside the institution for an authorized purpose, he shall be allowed to wear his own clothing or other inconspicuous clothing.

18. If prisoners are allowed to wear their own clothing, arrangements shall be made on their admission to the institution to ensure that it shall be clean and fit for use.

'유럽규칙' 95조 ① 미결 구금자에게 자기 소유의 사복이 청결하고 적당하다면 그 착용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위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결 구금자에게는 적당한 옷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미결 구금자가 법원에 출두하거나 허락된 외출을 할 때 적당한 사복이 없는 경우에는 양호한 상태의 의복이 제공되어야 한다.¹¹⁾

2) 국내 행형법규

(1) 의류 및 침구의 지급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지급한다(행형법 제20조 1항).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의류 및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시행령 제73조 1항).

(2) 의류 및 침구에 대한 세부적 규정

의류 및 침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법무부령의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규칙에서는 의류의 종류를 실내복·작업복·특수복·보조의로 규정하고, 이 의복과 의복의 부속물·모자 및 신발의 색채 및 규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규칙 제3조), 덧붙여 침구의 종류를 이불(솜이불 및 겹이불)·매트리스·담요 및 베개로 구분하고 그 색채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5조).

11) 95. ① Untried prisoners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of wearing their own clothing if it is clean and suitable. ② Prisoners who do not avail themselves of this opportunity, shall be supplied with suitable dress. ③ If they have no suitable clothing of their own, untried prisoners shall be provided with civilian clothing in good condition in which to appear in court or on authorized outings.

(3) 의류 및 침구의 위생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침구 및 의류는 세탁 또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시행령 제76조).

(4) 의류 및 침구의 수량

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 품목은 예외로 한다(시행령 75조 1항). 소장은 날씨·수용자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침구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시행령 제75조 2항).

(5) 의류 및 침구 등의 자비 부담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의류, 침구와 식량 등의 자비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행령법 제22조 1항). 자비 부담의 의류 또는 침구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시행령 제86조).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 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85조 1항). 자비 부담의 의류와 침구는 적당한 때에 교환·수선 또는 세탁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7조 1항). 교도소 등에서 자비 부담의 의류 및 침구의 수선 또는 세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한다(시행령 제87조 2항).

3) 설문조사 분석

(1) 겨울철 수인복

겨울에 지급되는 옷 종류는 조끼, 겹옷, 내의 등이었으며, 솜옷을

지급받은 경우도 14명이나 되었다. 겨울에 지급되는 방한복은 너무 얇아서 몹시 추웠다 148명(64.3%), 약간 춥다 48명(20.9%)이었으며, 적당하다는 답변은 8명(3.5%)에 불과했다.

겨울옷 지급 시기는 너무 늦거나(82명, 35.7%), 적당하다(76명, 33%)고 했으며, 겨울옷의 지급 시기는 대개 10월(45명), 11월(65명), 12월(32명)이었다.

(2) 겨울철 침구

겨울에 지급되는 침구 종류는 모포(125건), 솜이불(78건), 매트리스(153건)가 대종을 이루었다. 겨울철 침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족하며 춥다(162명, 83%)고 답변하였다. 겨울 침구 지급 시기는 너무 늦거나(88명, 38.3%), 적당하다(69명, 30%)고 보았으며, 72명(31.3%)은 답변하지 않았다.

(3) 침구의 위생

지급되는 겨울철 침구는 매우 비위생적이며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가 86명(43%), 냄새가 많이 나지만 견딜 만하다가 58명(29%), 보통이다가 51명(25.5%), 위생적이며 꽤적하다가 5명(2.5%)이었다.

(4) 수인복에 대한 만족도

관에서 지급되는 수인복을 입은 후의 느낌은 40명(18.1%)이 덤덤하다, 81명(36.7%)이 몹시 치욕스럽고 굴욕감을 느낀다, 97명(43.9%)이 약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서글퍼지는 정도라고 답변하였다.

(5) 개인 모포 및 침낭

수감생활 중 소유가 가능한 개인 모포의 수량은 여름의 경우 1장 45명, 2장 67명, 3장 40명이었으며, 겨울의 경우에는 주로 2장(59명)

이나 3장(81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 장도 없거나 6장까지 가지고 있기도 했다.

또한 수감생활중 침낭은 과반수 이상이 허가받았다고 대답했고 (135명, 58.7%), 허가되지 않은 경우는 49명(21.3%)이었다.

(6) 기타 의견

관급 혹은 자변 침구와 의류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류와 침구의 비위생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앓거나 기관지 가 손상되었다는 경험을 예로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급 침구 및 의류의 청결성 보장을 지적하였다. 지급되는 관복 및 침구는 질이 나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세탁 소홀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와 악취 때문에 시달린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지급되는 의류 및 침구는 겨울철 추위를 견디기에 부적당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소자가 감기와 동상에 시달린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자변 침구와 의류의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4) 종합 평가 및 개선책

(1) 법률상의 문제점

현행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은 의류 및 침구의 품목·색채·규격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고, 실제적으로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기준과 원칙 등은 제시하지 못하여 이 규칙에 대한 전반적 인 손질이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인정하여 자의적 판단과 실제적 준수의 여부가 의문시된다.

국제기준은 피구금자에게 지급되는 의류가 건강을 유지하고 품위

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 행형법규는 의류의 지급 요건으로 건강유지만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구금시설 내의 관급 의류만을 착용하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의류는 재소자의 자존심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강 유지가 가능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국내 행형법규에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의류 및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합하고 수용자의 자존심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국제기준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기 의류의 착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사복 착용이 수형자의 권리인 아니지만 청구권으로는 인정되고 있다.¹²⁾ 즉, 수형자가 세탁, 수선 및 규칙적인 옷 갈아입기를 스스로 하는 한 사복의 착용이 허용되며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반 외출시에도 사복 착용이 허가되고 있다.¹³⁾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의류의 착용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가 보안상 크게 위험하지 않고 소내 질서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기 의류의 착용을 허가하는 법률적 조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 위생과 자존심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의류 및 침구는 청결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잣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규정화되어야 한다. 국제기준은 의류 및 침구의 청결과 잣은 교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행형법규는 침구와 의류의 소독 후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어 청결과 적정한 신체 위생·자존심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의류 및 침구와 관련하여 "피구금자에게는 계절에 맞추어 위생적이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의류와 침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12) Ebenda, S.120(Sch ch) 참조

13) 독일 행형법 21조: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사, 1996년.

규정을 두어야 한다. 현재 지급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 1매로 제한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소장의 권한으로 그 수를 증감시킬 수 있는데(시행령 제75조 1, 2항), 겨울의 경우 지급되는 의류 및 침구류가 방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재소자의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도 거의 모든 재소자들이 겨울이면 동상에 걸리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형법 규정을 의류 및 침구의 수를 일괄적으로 1인 1매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건강과 신체 위생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의류 및 침구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기준은 침구의 지급에 있어 개인용 전용침구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행형법규에는 이러한 조항이 전무한 형편이고, 실제적으로도 지급되는 침구가 개인 전용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재소자의 신체 위생과 청결을 적정하게 유지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국내 행형법규에 개인용 침구의 지급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을 보장하는 규정도 두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일괄적으로 개량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이 95년 7월부터 개정되어 8종류의 관급 의류 중에서 자비 부담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미결 구금자의 의류 착용 자유를 관복 내에서만 한정하고 있는 쳐사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쳐사이며 법정에서의 방어권 행사의 위축과 심리적인 위축감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미결수용자에겐 사복이나 관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운영상의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방한의 목적으로 솜옷, 겹옷, 조끼, 내의 등의 의류와 모포, 매트리스, 솜이불 등의 침구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이러한 겨울 의류와 침구로는 추위를 막기에 부족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감방 안에 난방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소자는 관에서 지급되는 의류와 침구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급되는 수량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비 구입의 양도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겨울철 추위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한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겨울철 의류 및 침구는 추위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급되는 침구 또한 매우 비위생적이며, 악취가 심하여 이를 사용하는 재소자들이 고역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행형법규상 지급되는 침구는 소독을 거친 후 재소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한 계절을 창고에 쌓아두거나 다른 재소자가 사용하던 것을 세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상황이다. 또한 침구에 대한 건조가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침구류의 위생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화되어 있는 소독을 엄중하게 준수하고 나아가 침구의 세탁 및 교환, 건조 등의 권리를 재소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재소자의 대부분은 수인복에 대하여 초라함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소자 개인의 심정적인 위축감 이외에도 관급 의류의 청결 및 모양, 규격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지급되는 관급 의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청색으로 하여 단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크기가 재소자에게 적합하기보다는 재소자가 옷에 몸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돌려입게 됨으로써 옷이 낡고 불결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 세탁도 자유롭지 못해 재소자의 품위를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측에 의한 관리·세탁·교환·건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모양과 색채, 재

단을 정함에 있어서 재소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세심한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

자변 침구 및 의류의 구입은 소장의 권한하에서 가능하도록 행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모포 및 침낭의 보유가 가능했던 재소자도 있었던 반면 보유가 불가능하였던 재소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장의 권한하에서의 허가 및 제한'의 조치에 대한 일정 정도의 편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관급으로 지급되는 의류 및 침구는 겨울을 나기에 부적합하고 비위생적이며 조악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재소자가 의류 및 침구를 구입하는 경우 소내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제한되고 있는 모직물 등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적인 해결책은 관급 의류 및 침구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급 혹은 자변 침구 및 의류에 관한 기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관급 의류가 한 별밖에 지급되지 않은 데에서 생기는 문제를 많은 수가 지적하였다.

3. 식사

1) 국제기준

국제기준은 피구금자에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음식물의 제공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20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¹⁴⁾

'유럽규칙' 제25조 ① 당국은 피구금자에 대하여 위생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의 횟수로,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갖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¹⁵⁾

또한 국제기준에서는 음료수를 피구금자가 언제나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제20조 ②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¹⁶⁾

2) 국내 행형법규

(1) 식사 제공

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행형법 제21조 1항). 식량 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행형법 제21조 2항). 환자의 주식·부식 기타 영양물은 소장이 정한다(시행령 제84조).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음식물은 주식·부식·음료 기타 영양물로

14) 20 ①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by the administration at the usual hours with food of nutritional value adequate for health and strength, of wholesome quality and well prepared and served.

15) 25 ①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laid down by the health authorities, the administration shall provide the prisoners at the normal times with food which is prepared and presented, and which satisfies in quality and the standards of dietetic and modern hygiene and takes into account their age, health, the nature of their work, and so far as possible, religious or cultural requirements.

16) 20 ② Drinking water shall be available to every prisoner whenever he needs it.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시행령 제78조).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으로 한다(시행령 제89조 1항).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시행령 제89조 3항). 또한 행령법 제21조 2항에 근거해 '재소자 주·부식 급여 규칙'을 제정했다.

주·부식의 총 열량은 1인당 1일 2,500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본 규칙 제2조). 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이며,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쌀 8, 보리쌀 2의 비율로,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쌀 9, 보리쌀 1의 비율로 한다. 소장은 양곡 수급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혼합률을 변경할 수 있다.

재소자에게 1인당 1일 급여하는 주식은 작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750그램을,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60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소장은 재소자의 연령, 건강 및 작업의 종류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급여 기준량을 증감할 수 있다(본 규칙 4조 1항, 2항).

(2) 특식

소장은 국경일 등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시행령 제82조). 이때 제공하는 특식은 백미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작업을 장려하거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특별한 부식을 제공할 수 있다(재소자 주·부식 급여 규칙 제6조). 소장은 환자, 노역자, 임산부 및 유아를 테리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죽 등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으며, 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 대용식을 줄 수 있다.

(3) 자비 부담의 음식물

자비 부담 음식물의 종류 및 분량은 소장이 정한다(시행령 제88조). 소장은 음식물의 자비 부담을 원활 때는 수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교도소에서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이를 판매·공급 한다. 자비 부담의 음식물은 교도관의 참여 아래 의무관이 검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9조). 혼거 수용자의 자비 부담 음식물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감방 내 또는 공장에서 식사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90조). 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자비 부담 음식물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100조).

3) 설문조사 분석

밥을 먹을 때 느낌없이 묵묵히 먹는다가 120명(52.2%), 모멸감을 느끼고 서글퍼진다가 93명(40.4%), 만족하며 기쁘게 먹는다가 12명(5.2%)이었다.

식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당하다는 답변(54명, 23.5%)보다는 적당하지 않다는 답변(170명, 73.9%)이 훨씬 많았다.

식사의 위생 상태는 대다수가 좋지 않았다(163명, 73.9%)고 응답하였고, 대체로 적당하다는 61명(26.5%)이었으며, 1명만이 매우 위생적이라고 답했다.

식사의 조리 상태에 대해서는 맛이 없지만 억지로 먹는다가 170명(73.9%), 대체로 맛있다가 50명(21.7%)이었으며, 매우 맛있다는 답변은 1명뿐이었다.

식수의 질에 대해서는 물이 맑지 않고 맛도 없다가 116명(50.4%), 보통이다가 104명(45.2%)이었으며, 매우 깨끗하고 맛있는 편이라는 답변은 3명에 불과했다.

제공되는 식사의 문제점으로는 비위생적이다(120명, 22.6%), 재료가 좋지 못하다(119명, 22.4%), 메뉴가 적다(86명, 16.2%), 부식이 부족하다(80명, 15.1%)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밖에 기타 의견으로 사식이 없으면 못 먹을 정도라는 의견도 있었다.

식사와 관련해서는 부정행위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는 10명에 불과 했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이 있다고 답했다.

4) 종합 평가 및 개선책

(1) 법률상의 문제점

국제기준의 경우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만들어지는 식사의 급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 체질, 연령, 건강만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을 뿐 영양과 위생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급여되는 모든 음식은 충분한 영양을 갖추고 위생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문화적·관습적·종교적 식사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식사규칙은 그 지역적·문화적·종교적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구의 경우 이러한 식사 규칙에 대한 규정이 있다.

98년 현재 급량비는 1일 1인당 2,0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급량비는 주·부식, 연료에 필요한 경비를 다 합친 금액으로 하루 평균 세끼를 기준으로 하면 한끼 식사급량비가 약 690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책정 금액은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조리한다고 하더라도 질 좋은 식사를 지급하는 것에 실제적인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식사의 질이 호전되지 못하고 수용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급량비의 합리적인 책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98년 1월 6일부터 법무부는 수용실 내에 식탁·책상 겸용의 탁자

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탁자가 비치되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마룻바닥에 음식물을 놓고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식사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재소자에게 급여하는 함유 영양소의 기준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천명에 달하는 재소자의 건강 및 위생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규정상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 교정시설마다 최소 1인 이상씩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급식의 조리와 영양가를 의사가 감독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급여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재소자의 흡연은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기준에 이와 관련하여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흡연에 대한 금지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몇 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성인층의 흡연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구금시설 내에서 무리하게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흡연자들이 구금생활에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담배의 불법적 유통으로 인한 교도소 내 부정행위와 재소자들 사이의 소란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운영상의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재소자들은 주·부식의 재료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싼 부식들이 계속해서 제공되어 메뉴도 간소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급여되는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 많은 재소자들은 식사가 비위생적이고 불결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음식에서 비린내, 소독냄새가 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식사를 지급하는 용구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출되었다. 현재 식사 용기 및 용구는 소독한 후가 아니면 지급될 수 없도록 명

문화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거친 경우 소독만으로는 그 청결성을 보장하기가 힘들고, 특히 균 전염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식사 용기 및 용구는 최소한 매월 두 번 이상은 소독하여 식사 용기 및 용구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취사장 안도 위생적 설비를 갖추어 취사 도중에 발생하는 비위생적인 부분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소자가 음식의 간이 맛지 않거나 조미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대량급식이기에 몇천명의 입맛을 다 맞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식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은 조리되어야 한다.

많은 재소자들은 교도관과 교도소 당국, 취사장 출역수들 사이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어떤 재소자는 자신이 직접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식사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취사와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항을 두어 규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외국의 경우에는 직원용 식사와 일반 재소자용 식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곳에서 조리하여 배급하고 있어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의 식사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재소자 식사의 질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4. 일과

1) 국제기준

'유럽규칙' 제65조 a. 시설의 체계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획되고 관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a. 시설 내의 생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충족하고 일반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활기준을 확보할 것.¹⁷⁾

'최저기준규칙' 제20조 ①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중략) 음식을 급여하도록 한다.¹⁸⁾

2) 국내 행형법규

일과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17) 65. a. Every effort shall be made to ensure that the regimes of the institutions are designed and managed so as: a. to ensure that the conditions of life are compatible with human dignity and acceptable standards in community.

18) 20 ① Every prisoner shall be provided by the administration at the usual hours with food. (of nutritional value adequate for health and strength, of wholesome quality and well prepared and served.)

청송교도소 재소자 일과 시간표(98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상	07:00	07:00	06:30	06:30	06:00	06:00	06:00	06:00	06:30	06:30	07:00	07:00
명상, 청소 조식	07:00	07:00	06:30	06:30	06:00	06:00	06:00	06:00	06:30	06:30	07:00	76:00
	08:00	08:00	08:00	08:00	08:00	08:00	07:30	07:30	07:30	08:00	08:00	08:00
오전 작업	08:00	08:00	08:00	08:00	08:00	07:30	07:30	07:30	07:30	08:00	08:00	08: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점검, 증식, 휴식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오후 작업 및 점검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7:00	17: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00	17:00	17:00
식식	17:00	17: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00	17:00	17:00
	17:30	17: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7:30	17:30	17:30
청송, 휴식	17:30	17: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17:30	17:30	17:30
	18:00	18: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00	18:00	18:00
방송교육(반공 교육, 생활경제, 준법정신, 자습, 독서, 오락)												
	18:00	18: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00	18: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방송교육국가관, 종교지도, 성공 사례, 자기노작, 반성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취침	21:00	21:00	21:00	21:00	21:30	21:30	21:30	21:30	21:00	21:00	21:00	21:00

3) 설문조사 분석

기상시간을 묻는 질문에 6시가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시 30분(48명)에 일어난다고 답했다.

기상시간에 대해 대부분이 적당하다(152명, 66.1%)고 답했고, 너무 이르다가 63명(27.4%)이었으며, 너무 늦다는 6명(2.6%)에 불과했다.

저녁식사 시간은 5시(101명), 6시(42명), 4시(31명), 5시 30분(23명) 순으로 나타났다. 148명(64.3%)은 저녁식사가 너무 이르다라고 답했고, 적당하다라는 답은 72명(31.3%)이었다.

취침시간에 대해서는 148명(64.3%)이 너무 이르다, 57명(24.8%)이 적당하다, 14명(6.1%)이 너무 늦다라고 답변했다. 취침시간은 7시(8명), 7시 30분(2명), 8시(131명), 8시 30분(4명), 9시(56명), 9시 30분(2명), 10시(7명)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에 대해 적당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104명(45.2%)이었고, 너무 길다가 103명(44.8%), 너무 짧다가 8명(3.5%)이었다.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점검시간(23명), 저녁식사 후부터 취침 전까지(18명), 기상시간(11명), 취침 후부터 잠들기 전까지(11명), 폐방시간(4명), 휴일(4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지루한 시간은 오후 시간(44명), 저녁식사 이후부터 취침시간 까지(12명), 휴일(15명), 하루 종일(11명), 한자 교육시간(4명) 등이었다.

4) 종합 평가 및 개선책

(1) 법률상의 문제점

국내 행형법규에는 재소자의 일과에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정시설 위주로 교정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즉 “모든 피구금자의 일과 및 생활 조건은 피구금자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고 관습·문화·그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생활 기준의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처우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2) 운영 실태

재소자의 일과는 일반적 생활 조건에 대한 고려보다는 교정시설 위주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재소자가 일과를 비효율적으로 보내거나 심대한 무기력감을 표출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오후 4시경 부터 5시 30분경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교정시설의 폐방이 이루어진 직후로, 재소자들의 신체리듬을 고려한 배식이기보다는 교도관의 작업일정에 맞추어진 편의주의식 행정이다. 따라서 교도관 위주가 아니라 수용자의 신체·생활 리듬에 맞추어 식사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재소자의 대부분은 저녁식사 이후 2~3시간 이내(7~9시경)에 취침을 하도록 하여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억지로 잠을 청해야 하는 취침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취침시간을 무리하게 앞당기기보다는 합리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선에서 재조정하고, 일상적인 취침시간은 준수하도록 하되 집단 생활에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침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거의 대다수의 재소자들이 1일 10시간 이내의 취침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일과의 2/5에 달하는 시간으로 재소자들의 단조로 움과 무기력감을 증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체계화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없어 발생하는 폐해 중의 하나다. 아울러 적정한 소일거리를 부과하여 무리하게 수면시간을 확대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많은 재소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의 반복되는 하루 일과를 단조로 위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규칙’에서는 구금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그 자체가 형벌이므로 구금 그 자체가 갖는 고통 이상으로 악화시켜서는 안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돋고 생활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재소자들의 하루 일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점검시간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점검은 보통 하루에 3~4번 정도 받게 되는데 기상 후 기상 점검, 9시경에 이루어지는 일과시작 점검, 점심 전후로 진행되는 점심 점검, 폐방 이후 이루어지는 폐방 점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은 빈도수가 잦아 재소자들이 진득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감방 안에서의 행동을 무리하게 제약하는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점검의 횟수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 · 신문 열독 및 집필

최정학

1) 국제기준

피구금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또 교도소 내의 범죄나 무질서의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교정처우의 성공 여부는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고, 따라서 시사적인 뉴스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처우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처우는 결국 석방된 피구금자가 시민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구금시설 내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구금자가 정기간행물을 개인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관행이다.

'자유권조약' 제19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술되었거나 쓰여졌거나 인쇄되었거나 또는 예술의 형태를 띠었거나 기타 모든 종류의 수단에 의한 정보와 생각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수신 받고 거기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다.¹⁾

'최저기준규칙' 제39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특별한 공공간행물을 열람하거나 라디오 방송, 강연, 기타 행정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²⁾

현재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도서관은 그 규모와 내용의 면에서 매우 불충분하고 피구금자들이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피구금자들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또는 책에 대한 관심이 없으리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우선 도서관에는 구금에 관한 법규와 피구금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국내 법규와 당해 구금시설의 규칙이 포함된다. 또한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은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하므로 정보를 설명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훈련된 직원을 두어야 한다. 때때로 외부 도서관의 사서나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구금시설의 도서관은 충분한 양의 도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외부 도서관과 연결해 피구금자들이 충분히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기준규칙' 제40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
- 1) 19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 2) 39 Prisoners shall be kept informed regularly of the more important items of news by the reading of newspapers, periodicals or special institutional publications, by hearing wireless transmissions, by lectures or any similar means as authorized or controlled by the administration.

수 있는 오락적·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며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⁴⁾

'보호원칙' 제28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의 한도 내에서, 공적 자료에
대해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교육적·문화적·정보적 자료를 얻을
권리가 있다.⁴⁾

'유럽규칙' 제82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사용할 수 있
는 폭넓은 범위의 오락적이고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갖춘 도서관을 가
져야 하고 피구금자들은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가능
하다면 행형시설 도서관은 외부 지역도서관의 서비스망과 연결될 수 있도
록 만들어져야 한다.⁵⁾

미결수용자는 법, 특히 형사소송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가 특별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금시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갖출 의무가 있다.

- 3) 40 Every institution shall have a library for the use of all categories of prisoners, adequately stocked with both recreational and instructional books, and prisoners shall be encouraged to make full use of it.
- 4) 28 A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within the limits of available resources, if from public sources, reasonable quantities of educational, cultural and informational material, subject to reasonable conditions to ensure security and good order in the place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 5) 82 Every institution shall have a library for the use of all categories of prisoners, adequately stocked with a wide range of both recreational and instructional books, and prisoners shall be encouraged to make full use of it. Wherever possible the prison library should be organized in co-operation with community library services.

'최저기준규칙' 제90조 미결수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법
무 당국의 이해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
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⁶⁾

2) 국내 행형법규

행형법 제33조 (도서열람)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
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
가하여야 한다.

행형법 시행령 제112조 (피교육자의 문구 대여) 소장은 교육을 받
는 수형자에게는 거실에서 교육에 필요한 문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 제59조 (신문열람) ①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하여는 매일 신문을 열람시킬 수 있다.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제3급 이하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 열람은 교도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고 그 시간은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에 한한다.

③ 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교도소장
이 정한다.

3) 국내 행형 현실

도서와 신문의 열독 그리고 집필의 자유에 관한 설문조사와 답변

- 6) 90 An untried prisoner shall be allowed to procure at his own expense or at the expense of a third party such books, newspapers, writing materials and other means of occupation as are compatible with the interes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security and good order of the institution.

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도소 내 도서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있다는 응답이 30.9%, 없다는 응답이 29.1%인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21%여서 대체로 절반 이상의 교도소에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 좀더 자세히 나타나겠지만 많은 재소자가 도서실의 설치 여부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로 그 이용 실태는 대단히 열악하다.

도서실에 소장된 책의 숫자와 종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답과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답이 모두 6%에 불과한 반면에 불만족스럽다는 답과 터무니 없이 빈약하다는 답이 각각 12.6%에 이르러 도서실의 실제 도서량이 매우 부족함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35.7%의 재소자가 어떤 책들이 몇권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도서실에 대한 이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도서실의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도 확인된다. 도서대출방법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이용 방법을 모른다는 대답이 25%를 차지하였으며 도서실의 이용이 쉽고 자유로운가를 묻는 질문에도 역시 27%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는 응답과 매우 까다롭고 부자유스러웠다는 응답이 모두 25%에 달해 재소자들이 도서실의 이용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이른바 양심수 내지 공안사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에 도서실의 이용을 더욱 어렵게 느끼거나 그 이용률이 더 낮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어쨌든 현재 우리 교도소의 도서실 상태는 객관적으로도 그 질과 양 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결수의 경우에 형사소송과 관련된 정보, 즉 법률서적이나 법전의 비치, 또 기결수의 경우에는 행형법규나 재소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미결 구치소의 경우 법전이나 법서가 비치되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응답이 19%, 수감자용으로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응답이 30%이며, 나아가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39%나 되어 90%의 미결수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 나머지 4%는 비치되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책이 부족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답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정은 교도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재소자용의 행형법규가 비치되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답이 64%, 비치되어 있었지만 열람하기 어려웠다는 답이 6%여서 모두 70%가 행형법규의 열람이 불가능했음을 지적하고 있고, 더욱이 행형법이 뭔지 모른다는 답도 18%나 되었다.

외부 차입도서에 관해서 우선 그 양적인 허용 한도에 관한 질문에 무한정이라는 답이 30%로 가장 많았지만 10권 미만이라는 응답도 14%나 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대체로 차입되는 도서의 양은 크게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차입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59%의 재소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다고 답한 반면 없다는 답은 27%에 그쳤다. 불허된 책의 제목은 『사람만이 희망이다』, 『노동의 새벽』과 같은 노동시집이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자본론』 등의 사회과학 서적이 많았다. 이러한 응답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대상이 다소 특정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겠지만 어쨌든 재소자들은 차입이 불허된 경우에 그 이유를 이직성 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32%), 아니면 교도소 내막에 관한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11%)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서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

었다는 답이 53%, 직접 본 일이 있다는 답이 10%여서 대다수의 재소자가 금서목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런 금서목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은 2.6%에 불과하였다.

또 차입되는 잡지의 경우에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는 일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자주 있다는 답이 27%, 가끔 있다는 답이 17%, 한두 번 있었다는 답이 8%여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21%에 비해 훨씬 많았다. 삭제된 잡지는 『한겨레21』(38건)과 『말』(49건)이 가장 많았으며, 삭제된 기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치소나 교도소 관련 기사, 양심수 관련 기사, 신창원 기사 등 정치적 내용 또는 교도소 관련 기사를 많이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신문 구독에 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소 전에 신문을 구독한 재소자가 78%,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재소자가 9%로 압도적 다수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다. 한편 구독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답도 4.3%나 되었다. 스스로 구독할 수 없는 재소자를 위하여 별도로 신문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답이 92%나 되어 대부분의 교도소에 개인적인 구독 외에 신문은 비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치하고 있었다는 답은 3%에 불과하였다. 잡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문기사도 삭제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주 있었다는 답이 52%, 가끔 있었다는 답이 33%로, 85% 정도의 재소자가 신문기사의 삭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그런 일이)없었다는 답은 7.4%에 그쳤다. 삭제된 기사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잡지의 경우와 비슷하게 시국관련 기사(22.3%)나 교도소 내 비리사건(23.2%)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탈옥수 신창원 기사가 삭제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집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우선 필기도구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62%가 구입하는 분량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많은 교도소에서 필기도구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행인 것은 26%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아예 구입할 수 없다고 답한 경우도 8%나 되었다. 영치금이 없는 사람에게 집필도구가 지급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58%의 재소자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하여 많은 교도소에서 오직 자비로만 필기도구를 구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필도구는 사방에 자신이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76%), 따라서 집필도 감방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74%). 집필 시간에 제한은 없는 편이고(76%), 집필한 노트도 자신이 보관하는 경우(61%)가 영치시키는 경우(23%)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자신이 쓴 노트나 편지를 원하는 때에 외부에 반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0%가 그럴 수 없다고 답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자신이 쓴 노트를 출소할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74%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어 집필 작품의 외부 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평가 및 개선책

신문·잡지 등 도서의 열람은 과거에는 이를 수용자에 대한 교육의 일부로 생각하여 적극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열람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도서 혹은 신문의 열람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시청 등은 현법상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른바 '알 권리'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모집권, 정보제공권, 정보수령권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자로부터 방해됨이 없이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 대중매체의 수령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재소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 행형법도 이런 관점에서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제33조)고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열람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교도소에서 도서·신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유가 폭넓게 실현되고 있는가? 위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교도소 내에 있는 도서실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그 시설의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문조사 결과가 잘 보여주듯이 현재 우리 교도소의 도서실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을 뿐이며, 행형 당국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도서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설령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곳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행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수형자의 ‘재사회화’이며 이를 위한 도서 열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소내의 도서실이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를 굳이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들은 재소자의 문화적·교육적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형이 ‘자유의 박탈’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형벌의 ‘인간화의 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행형법규는 소내 도서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원칙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도서실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도서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되어 있는 도서실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서실의 기능이 재소자에 대한 문화적·교육적 역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서실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행형법에 관한 각종 서적이나 법전 등을 비치해 놓는다면 재소자, 특히 미결수의 경우에 자신의 소송절차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해 교도소의 내부 규칙과 같은 것도 공개적으로 비치해 두어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90%를 넘는 미결수용자가 형사소송 관련 법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약 1/5의 재소자가 행형법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 교도소가 이들을 무권리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실에 관한 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재소자들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신문의 열람과 관련해서는 우선 약 80%의 재소자가 신문을 개인적으로 구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들의 정보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에는 미결수에게는 신문의 구독이 허용되었지만 기결수의 경우에는 행형 성적이 2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했었다. 그런데 1996년 1월부터 3급 이하의 기결수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있도록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신문의 종류와 수량을 교도소장의 재량 사항으로 하는 등 아직도 여러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문 열람권은 기본적인 알권리의 하나이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폭넓게 허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비로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실에 몇 가지 종류의 신문을 향시 비치해 두어야 한다. 여러 국제기준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외부와의 소통은 재소자의 재사회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가 삭제되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의 재소자가 기사가 삭제된 신문이나 잡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소자의 사상을 통제하려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관행의 잔재일 뿐이다. 행형의 목적이 재사회화라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소자들에게 감출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더욱 잘 알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준에서도 피구금자에 대한 정보의 제한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 런 합리적인 기준도,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러한 전근대적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재소자들은 어떤 기사가 삭제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차단하려 하는 교도당국의 노력은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금서목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상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만 그 우열이 판가름날 수 있다는 것이 사상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에게 어떤 류의 사상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문명국가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발상이다. 또 이것은 위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인과 재소자를 똑같이 처우해야 한다는 행형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특정한 표현물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개적인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재소자들의 사고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형 당국 스스로 자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필의 자유와 관련해서 94년 11월 법무부가 행정쇄신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소자의 집필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소자가 필기 용구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집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실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집필 작품의 외부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것 같다.⁷⁾ 여기에 대해서도 교도소와 외부사회의 소통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통제의 이유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작품의 반출도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집필의 자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굳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현실로 보아 보다 명확하게 기본적인 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7) 법무부는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작품의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 『교도소 어떻게 달라졌다』, 1998, 22쪽.

제12장
이송 및 전방

박찬운

1) 국제기준

행형에 관한 국제기준 중 이송과 전방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국내 행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저 기준규칙'에 이송 중 피구금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공중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운송수단이 육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제45조). 특히 '보호원칙'에는 이송시 피구금자의 의사존중의 원칙을 천명한 중요한 조문이 있다.

'보호원칙' 제20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통상 주거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도록 해야 한다.¹⁾

1) 20. If a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 so requests, he shall if possible be kept in a place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reasonably near his usual place of residence.

2) 설문조사 분석

설문 내용 중 이감이나 전방을 할 때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오로지 6명(2.6%)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거주지로의 이송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무응답이 65.2%), 이것은 이송을 재소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시설 측의 전권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응답자의 상당수는 이감이나 전방이 재소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소위 수용시설 측이 문제 재소자를 다른 일반 재소자와 격리시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송과 전방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3) 평가 및 개선책

우선 미결 구금자의 이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헌법상 요구하는 영장주의 원칙이 그 제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미결 구금자는 자신의 가족이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구금과 관련해서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금 장소에 대한 결정은 법관의 권한이므로 재판중에 미결 구금자를 법원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92년 전교조 사건으로 구속된 이수호 씨 사건²⁾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수호 씨는 항소심이 끝난 후 상고를 제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안양교도소 측이 갑자기 진주교

2) 서울고등법원 92부417 이송처분 효력 정지.

도소로 이감을 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안양교도소의 이송 처분이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미결 구금자에 대한 구금 장소의 변경은 영장주의 원칙상 법원의 소관 사항으로 구금 시설의 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결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재소자의 재사회화에 역점을 두고 이송과 전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소자가 그의 가족이나 생활의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정도가 심해 그의 재사회화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국제기준에서는 이감시 재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 그의 거주지에 가까운 곳에 구금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정 당국도 이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이감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옳다. 전방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는 분류수용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재소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이송과 전방이 재소자의 소내 행위에 대한 보복성 처우가 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제한 규정이 행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제2부

한국감옥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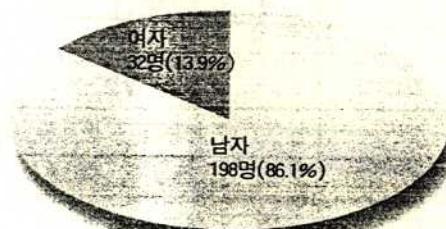
감옥 인권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1장 응답자 인적사항

1. 거주지역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101	43.9	경남	11	4.8
부산	16	7.0	경북	5	2.2
대구	15	6.5	전남	14	6.1
인천	5	2.2	전북	7	3.0
광주	11	4.8	제주	3	1.3
대전	4	1.7	충남	2	0.9
강원	5	2.2	충북	1	0.4
경기	19	8.3	무응답	11	4.8

2. 성별



3. 결혼 여부



4. 나이

	명	비율(%)
20세 이상 30세 미만	107	46.5
30세 이상 40세 미만	47	20.4
40세 이상 50세 미만	32	13.9
50세 이상 60세 미만	18	7.8
60세 이상 70세 미만	8	3.5
70세 이상	7	3.0
무응답	11	4.8

5. 입소 전 직업

	명	비율(%)		명	비율(%)
학 생	92	40.0	회 사 원	19	8.3
노 동 자	29	12.6	무 직	12	5.2
자 영 업	19	8.3	기 타	23	10.0
사회운동	8	3.5	무 응답	28	12.2

6. 복역 기간

	명	비율(%)
1년 미만	96	41.7
1년 이상 2년 미만	47	20.4
2년 이상 3년 미만	25	10.9
3년 이상 5년 미만	14	6.1
5년 이상 10년 미만	13	5.7
10년 이상 15년 미만	13	5.7
15년 이상	8	3.4
무응답	14	6.1

7. 적용 법률

	명	비율(%)
국가보안법	91	39.6
집시법	33	14.3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	5	2.2
절도	28	12.2
강도(상해, 살인)	7	3.0
신용카드	1	0.4
유가증권 위조 등	3	1.3
살인	4	1.7
군형법	2	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1.3
변호사법	1	0.4
강간 치상	2	0.9
폭력행위 등	16	7.0
상해	1	0.4
형법	3	1.3
국보법과 집시법	2	0.9
특공방과 폭력	2	0.9
집시법과 특공방	2	0.9
기타	3	1.3
무응답	21	9.1

8. 전과 횟수

	명	비율(%)		명	비율(%)
1번	50	21.7	5번	11	4.8
2번	26	11.3	5번 이상	15	6.5
3번	5	2.2	없음	88	38.3
4번	16	7.0	무응답	19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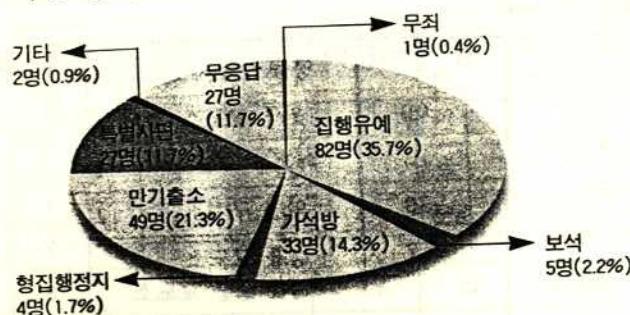
9. 입소 교도소

	명	비율(%)		명	비율(%)
광주 교도소	10	4.3	의정부 교도소	4	1.7
대구 교도소	16	7.0	인천 구치소	7	3.0
대전 교도소	3	1.3	장흥 교도소	1	0.4
마산 교도소	2	0.9	천주 교도소	6	2.6
목포 교도소	6	2.6	제주 교도소	2	0.9
부산 교도소	2	0.9	진주 교도소	4	1.7
부산 구치소	11	4.8	청송 교도소	6	2.6
서울 구치소	48	20.9	청주 교도소	1	0.4
성동 구치소	25	10.9	충천 교도소	5	2.2
수원 교도소	4	1.7	홍성 교도소	1	0.4
순천 교도소	1	0.4	서대문 구치소	3	1.3
안동 교도소	1	0.4	육군 교도소	5	2.2
안양 교도소	10	4.3	서울 형무소	2	0.9
영등포 교도소	1	0.4	공주 치료 감호소	1	0.4
영등포 구치소	19	8.3	무응답	21	9.1
원주 교도소	2	0.9			

10. 출소 교도소

	명	비율(%)		명	비율(%)
강릉 교도소	2	0.9	영등포 구치소	10	4.3
경주 교도소	2	0.9	원주 교도소	8	3.5
공주 교도소	3	1.3	의정부 교도소	4	1.7
광주 교도소	12	5.2	인천 구치소	2	0.9
군산 교도소	13	5.7	장흥 교도소	3	1.3
김천 소년 교도소	3	1.3	전주 교도소	12	5.2
대구 교도소	12	5.2	제주 교도소	3	1.3
대전 교도소	14	6.1	진주 교도소	6	2.6
마산 교도소	1	0.4	천안 개방 교도소	1	0.4
목포 교도소	4	1.7	천안 소년 교도소	2	0.9
부산 교도소	3	1.3	청송 교도소	1	0.4
부산 구치소	7	3.0	청송 제2보호 감호소	23	10.0
서울 구치소	21	9.1	청주 교도소	2	0.9
성동 구치소	13	5.7	청주 여자 교도소	1	0.4
수원 교도소	4	1.7	춘천 교도소	5	2.2
순천 교도소	2	0.9	육군 교도소	3	1.3
안동 교도소	6	2.6	공주 치료 감호소	1	0.4
안양 교도소	7	3.0	무응답	11	4.8
영등포 교도소	3	1.3			

11. 석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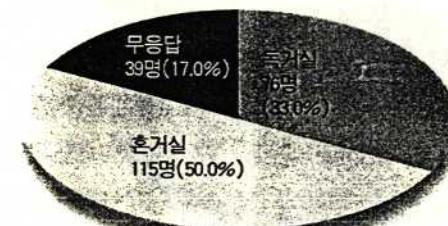


12.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도소

	명	비율(%)		명	비율(%)
강릉 교도소	2	0.9	안동 교도소	6	2.6
경주 교도소	2	0.9	안양 교도소	8	3.5
공주 교도소	3	1.3	영등포 교도소	2	0.9
광주 교도소	13	5.7	영등포 구치소	10	4.3
군산 교도소	14	6.1	원주 교도소	7	3.0
김천 소년 교도소	3	1.3	의정부 교도소	5	2.2
대구 교도소	13	5.7	인천 구치소	2	0.9
대전 교도소	12	5.2	장흥 교도소	3	1.3
마산 교도소	2	0.9	전주 교도소	12	5.2
목포 교도소	4	1.7	제주 교도소	2	0.9
부산 교도소	4	1.7	진주 교도소	5	2.2
부산 구치소	7	3.0	천안 개방 교도소	1	0.4
서울 구치소	22	9.6	천안 소년 교도소	2	0.9
성동 구치소	15	6.5	청송 교도소	1	0.4
수원 교도소	4	1.7	청송 제2보호감호소	29	12.6
순천 교도소	2	0.9	청주 교도소	2	0.9

청주 여자 교도소	2	0.9	육군 교도소	3	1.3
춘천 교도소	5	2.2	공주 치료 감호소	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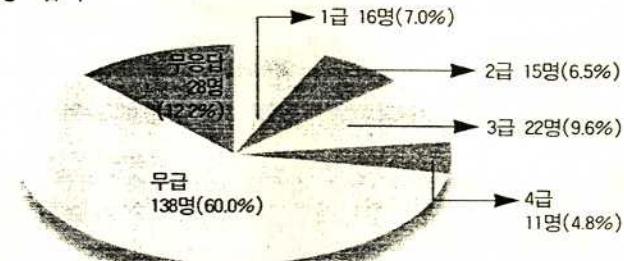
13. 감방 형태



14. 취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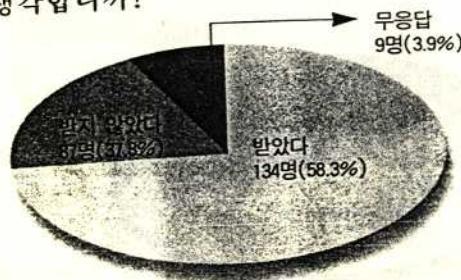


15. 행장 급수



제2장 수감생활에서의 차별

1. 당신은 수감생활 중 교도관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2.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① 종교	11명	3.97%
② 정치적 의견	85명	30.68%
③ 출신 지역	15명	5.41%
④ 재산	12명	4.33%
⑤ 가문(집안)	3명	1.08%
⑥ 사회적 신분	27명	9.75%
⑦ 질병	5명	1.81%
⑧ 나이	7명	2.53%
⑨ 기타	18명	6.50%
⑩ 무응답	94명	33.94%

■ 기타—공안사범으로 주요 감시대상(5명)/재소자란 이유로(반말, 폭언 등)(3명)/학생이라는 이유(2명)/경제사범, 조직폭력배와 일반잡범의 차별(2명)/전방문제(1명)/가출옥문제(1명)/능력이 부족해서(1명)/지

인이 아니기 때문에(1명)/더 나은 대우를 받음(1명)

3.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대우를 받았습니까?

■ 생활 반경의 제한(23명)

면담 거부/고문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불허/신문삭제/운동 혼자/종교활동 금지/특별감화대상으로 분류되어 방장 옆에서 자야 했음/상대적으로 면회 면담 등이 우선시됨/공안 사범이라고 노동(물 끌어 가는 것, 빨래 너는 것에도 제약)/일반 수형자와는 달리 취업 및 식사, 운동,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학생들끼리 같이 가는 것을 제한/다른 방들에게도 처음부터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지시를 내림/정치적 의견을 타 재소자와 대화 금지/잦은 전방/타재소자의 운동시간을 위해 본인이 운동에 나오지 말 것을 요구/분리수용, 면회, 접견 물 제한과 철저한 격리/독거/일 대 일 감시/타재소자와의 접촉 금지/운동시간이 거의 없음. 계속 신입방에만 수용시킴/정치범이란 이유로 독거 수용/비리 정치범들에 비해 불이익—면회 및 좁은 방의 배치 등 의 차이/분류처우에서 제외됨으로써 출력, 취미활동 따위의 차별. 독거실 수감 중에 운동시간을 제일 뜨거운 시간에 배정 받음

■ 집중적 감시(10명)

요시찰 대상/교도관의 회유책/공안사범에 대한 감시/남다른 감시와 견열. 교도관들이 따로 찾아옴

■ 서신, 접견, 책자 등의 견열(9명)

서신 및 책자 견열을 통한 삭제나 폐기로 받지 못한 적 있음.

■ 보다 나은 처우(8명)

불편한 점을 항상 물었다(교도관이 나에게)/담당이 있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운동시간의 연장/천주교 교역자로서 나은 처우

■ 정치 성향 비아냥(7명)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은근한 빨갱이라고…/정치적 입장에 대한 조롱을 받았다/사상범이라는 이유로 견해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봄/다수가 있는 곳에서 비아냥거림/간첩, 무연고자라고 해서 상대하려고 하지 않음/체제전복세력 등으로 처우됨/비전향 장기수로서 온갖 방면

■ 구타 등의 가혹행위(6명)

비전향 장기수로서의 고문 당함/소내에서 교도소 측에 의한 독방구금 및 기타 가해행위 등/독거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고문 및 폭행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집행방해로 고소당함/대화 중에 나온 말을 가지고 시승시각의 위협을 받음/독방에 자주 감금함

■ 반말, 욕설(4명)

모욕스러운 말/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다수 교도관들의 반말입니다.
그들은 평어와 반말을 구분하지 못한다.

■ 금전적인 문제(4명)

돈 없고 빼 없으면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보다 등한시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뇌물을 주는 것이 보인다/교도관에게 금전적으로 대접 안했기 때문에

■ 의료품이나 병원에 가기가 힘들었다(4명)

의약품 반입이 안됨/약을 너무 자주 시킨다는 이유로

■ 노동의 자유 박탈(출역금지)(3명)

■ 죄명으로(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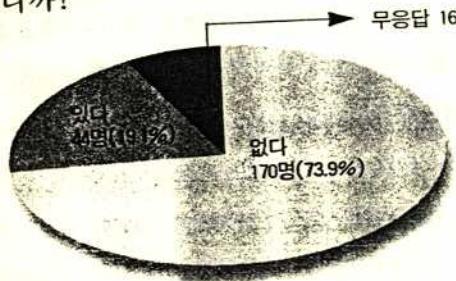
■ 기타

일반수와 공안의 차이/온갖 방면의 차별/학연의 차이로/공안수란 이유로 구체적 접견 규정이 모호하고 1달에 2회만 허용/열심히 했으나 가출옥을 한 달도 받지 못하였다/그러한 차별은 바깥에서도 받아 당연히 받아들이는 수모인데 단지 그게 24시간의 생활을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신앙의 차이/직원을 고소하므로/

교도관들의 직권남용으로 인권유린을 당했음/조직폭력배들과 일반범죄자들과의 차별 처우/교도관의 태도/항상 멀시의 대상이 됨/교도관의 회유책/출신 성분으로/의견존중 문제/일상생활에서 나의 행동, 옷차림, 언행, 독보 등을 조소함/짐승 대접을 받았다/종교집회가 있으나 집회에 잘 참석할 수가 없다/철저히 분리된 생활—운동기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함/행장급수

제3장 분류

1. 당신은 20세 미만인 소년수와 같은 감방에 수감된 일이 있습니까?



2. 있다면 ____ 교도(구치)소에서 ____년 ____월경인가?

광주 교도소(2명)—97/7

김천 교도소(3명)

대구 교도소(3명)—96/7, 80/10, 98/4

대전 교도소(2명)—89/1, 95/6

목포 교도소(1명)—96/7

서울 구치소(13명)—91/6, 91/7, 97/11, 96/4, 94/6, 97/1, 96/2,

96/12, 94/5, 94/5

성동 구치소(2명)—93/2, 97/7

수원 교도소(1명)—95/7

안양 교도소(2명)—97/8, 96/8

영등포 구치소(3명)—98/1, 97/6, 93/2

육군 교도소(1명)—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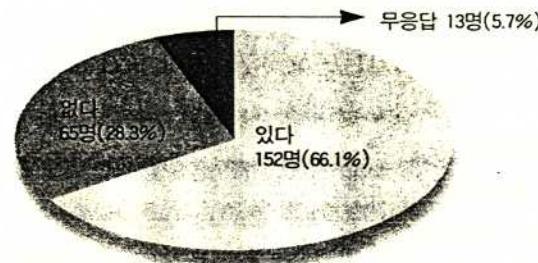
인천 구치소(1명)—76/10

전주 교도소(2명)—75/5, 97/8

천안 소년 교도소(1명)—90/?

춘천 교도소(1명)—98/5

3. 당신은 전과 2범 이상 수용자와 초범자가 함께 감방에 수감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4. 있다면 ____ 교도(구치)소에서 ____년 ____월경인가?

광주 교도소(11명)—94/8, 97/10, 97/5, 80/5, 98/3, 97/7, 90/10

군산 교도소(2명)

대구 교도소(13명)—97/10, 97/7, 97/9, 97/12, 96/7, 96/1, 96/8, 96/7, 98/4, 98, 97/8

대전 교도소(10명)—96/11, 95/1, 97/6, 98/3, 97/12, 97/5, 97/12, 95/2

목포 교도소(1명)—97/10

부산 구치소(5명)—89/6, 95/3, 97/10, 97/8, 98/2

서대문 구치소(1명)

서울 구치소(28명)—96/12, 91/8, 91/7, 96/6, 96/10, 97/6, 96/4, 91/6, 97/5, 92/8, 97/11, 97/7, 97/5, 97/2, 97/6, 93/3, 96/12, 94/7, 90/5, 92/2, 96/9, 90/5, 94/10

성동 구치소(11명)—93/7, 93, 97/6, 96/12, 97/7, 97/7, 98/6

수원 교도소(3명)—96/8, 97/8, 95/11

순천 교도소(1명)—96/8

안동 교도소(안동 교도소의 경우 2번 교도소인데 아직도 초범이 많다)(1명)—98
안양 교도소(16명)—97/4, 96/9, 96/9(3), 97/8, 92/3, 97/8, 97/11, 96/8
영등포 교도소(2명)—97/12
영등포 구치소(8명)—97/11, 96/9, 97/6, 97/9, 97/11, 93, 98/1
원주 교도소(2명)—96/10, 96/10
육군 교도소(1명)—98
의정부 교도소(3명)—96/10, 95, 97/2
인천 구치소(1명)
전주 교도소(5명)—97/7, 96/2, 97/8
제주 교도소(2명)—97/1, 97/10
진주 교도소(3명)—97/10, 98/1, 97/10
천안 교도소(1명)—97/10
충천 교도소(2명)—88/9, 98/5
홍성 교도소(1명)—97/6

제4장 수용시설

- 당신이 수용되었던 감방의 (화장실을 포함한) 면적은 몇 평이었습니까? 또한 그 감방에 수용된 인원은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

- 17사단 영창은 약 0.75평에 1명 수용
- 강릉 교도소 3동 4방은 약 1.8평이었고 18명 정도 수용
3동 독3방은 약 1.25평에 1명 수용
- 경주 교도소 2동 11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 공주 치료 감호소 약 100평에 60명 수용
- 공주 교도소 2상동 10방은 약 1.5평에 1~4명 수용
4동 6방은 약 4평에 16명 수용
- 광주 교도소 1하동 21방은 약 4.5평에 16명 수용
2동 15방은 약 3.45평에 15명 수용
2상2사 18방은 약 3.4평에 10명 수용
2하동 14방은 약 3.74평에 15명 수용
5동 12방은 약 4.5평에 33명 수용
미결1상 11방은 3.45평에 16명 수용
미결2상 6방은 약 3.45평에 16명 수용
미결2동 18방은 약 0.7평에 1명 수용
상층 9방은 약 3.45평에 13명 수용
하동 14방은 약 3.4평에 14명 수용
약 17평에 6명 수용
약 3평에 17명 수용
- 군산 교도소 1동 6방은 약 5.8평에 14명 수용
1동 상3방은 약 4.5평에 12명 수용

2동 상3방은 약 4.75평에 13~14명 수용
2동 상중하방은 약 5.2평에 15명 수용
2동 하5방은 약 2.6평에 약 15명 수용
3동 21방은 약 0.75평에 1명 수용
3동 25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3동 하23방은 약 1.3평에 1명 수용
3동 하23방은 약 1.2평에 1명 수용
병동 4방은 약 1.5평에 1명 수용
약 0.75평에 1명 수용
약 2.6평에 1명 수용

■ 김천 교도소 1동 하2방은 약 5.25평에 1명 수용

■ 김천 소년 교도소 6방은 약 2평에 1명 수용

■ 대구 교도소 1동 18방은 약 4.75평에 18명 수용
1동 5방은 약 3평에 18명 수용
1상동 15방은 약 4평에 18명 수용
1하 2방은 약 1.48평에 1명 수용
2하동 2방은 약 4평에 20명 정도 수용
2동 3방은 약 4평에 16명 수용
2사 3방은 약 4평에 20명 수용
3동 2방은 약 1.5평에 1명 수용
5동 5방은 약 4평이었고 14명 정도 수용
5동 상3실은 약 4평에 11명 수용
하동 4방은 약 4.12평에 15~19명 수용
약 4.17평에 16명 수용

■ 대전 교도소 2동 4방은 약 1.4평에 9명 수용
4동 3방은 약 4.8평에 12명 수용
5동상 8방은 약 4.7평에 8명 수용

6동 26방은 약 0.72평에 1~3명 수용
6동 42방은 약 0.968평에 1명 수용
13동 2방은 약 3평에 8명 수용
13동 7방은 약 2.2평에 6명 수용
13동은 약 3평에 5명 수용
15동 상1방은 약 0.98평이었고 1명 수용
15상동 14방은 약 0.98평에 1명 수용
16동 모든 방은 약 1.01평에 1명 수용
16동 상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 마산 교도소 2동 3방은 약 1.5평에 9명 수용
8동 10방은 약 1.2평에 1명 수용

■ 목포 교도소 1하 3방은 약 2평에 1명 수용
여사 3동은 약 1평에 1명 수용
3동 16방은 약 4.17평에 9명 수용

■ 부산 구치소 1동 3방은 약 4.3평에 8~10명 수용
1하동 3방은 약 4.9평에 20명 수용

■ 부산 교도소 2동 하4방은 약 4.9평에 12~19명 수용
7동 10방은 약 3평에 9명 수용
7동 28방은 약 0.75평에 1명 수용
7상 10방은 약 2.6평에 9명 수용
8동 4방은 약 2.5평에 1명 수용
8동 24방은 약 0.9평에 1명 수용
8상동 6방은 약 2.59평에 1명 수용
11동 109방은 약 3.25평에 15~19명 수용
약 0.8평에 9명 수용

■ 서울 구치소 1동 15방은 약 1.1평에 1명 수용
1상 18방은 0.94평에 2명 수용

2동 1방은 약 2.5평에 8~9명 수용
2동 3방은 약 1.1평에 1명 수용
2동 약 2평에 8명 수용
2상동 4방은 9명 수용
2상동 12방은 약 4.5평에 9명 수용
2상동 13방은 약 0.9평에 2명 수용
2하동 12방은 8명 수용
3동 5방은 약 2평에 5명 수용
3상 6방은 약 3평에 10명 수용
4동 12방은 약 2평에 5명 수용
4동 5방은 약 2평에 5명 수용
4동 7방은 1.75평에 5명 수용
4동 7방은 약 2평에 5명 수용
4동 중9방은 약 2평에 11명 수용
7동 5방은 약 2평에 5명 수용
9동 중14방은 약 2.35평에 8명 수용
10동 10방은 약 4평에 7명 수용
10동 전체방은 8명 수용
10중 6방은 약 2.3평에 8명 수용
11동 13방은 약 2.3평에 8명 수용
11동 2방은 약 1.07평에 1명 수용
14동 6방은 약 4.5평에 10명 수용
15상동 7방은 약 5평에 10명 수용
15중동 6방은 약 2.1평은 9~10명 수용
107동 10방은 약 2.5평이었고 8명 정도 수용
하동 11방은 약 2.06평에 7~10명 수용

■ 성동 구치소 1동 2방은 약 3~4평에 15~17명 수용

1동 상2방은 약 4평에 13명 수용
1하 4방은 약 4.03평에 13~16명 수용
1동 10방은 약 2.25평에 9명 수용
2동 3방은 약 3평에 12명 수용
2동 4방은 약 2.15평에 8명 수용
2동 하8방은 약 2.7평에 8명 수용
8동 하2방은 약 4평이었고 7명 정도 수용
8하 8방은 약 2.25평에 9명 수용
10동 8방은 약 3.02평에 10명 수용
11동 2방은 약 3평에 10명 수용
11동 상8방은 약 3.05평에 10명 수용
12동 3방은 약 3.05평에 8~10명 수용
12동 하9방은 약 3.3평에 10명 수용
여사 2동 4방은 약 6평에 16명 수용

■ 수원 구치소 2동 상16방은 약 2.5평에 1명 수용
4하동 17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4하동 21방은 0.99평에 1명 수용
여사 4동은 약 1.3평에 3~4명 수용

■ 순천 교도소 1동 14방은 약 1.54평에 1명 수용
2사동 2방은 4.5평에 18~22명 수용

■ 안동 교도소 2동 17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2동 20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4동상 모든 방은 약 1.4평에 4명 정도 수용
5동 9방은 약 0.95평에 1명 수용
5동 11방은 약 0.75평에 1명 수용

■ 안양 교도소 3동 상11방은 약 7평에 22명 수용
3동 하8방은 15~20명 수용

4동 32방은 약 1평이었고 1명 정도 수용

4동 상29방은 약 0.75평에 1명 수용

5동 3방은 약 4.5평에 18명 수용

6동 7방은 약 7평에 20명 수용

7동 3방은 약 2평에 12명 수용

8동 4방은 약 7평에 20명 수용

■ 영등포 교도소 1동 1방은 약 0.75평에 1명 수용

5동 10방은 약 4평에 14명 수용

■ 영등포 구치소 1동 하1방은 약 4평에 16명 수용

2동 4방은 약 4.8평에 15~20명 수용

4동 5방은 약 4.5평은 15명 수용

4동 7방은 약 4.8평에 18명 수용

4동 하5방은 약 4.5평에 15명 수용

5동 4방은 약 4평이었고 14명 정도 수용

6동상 3방은 약 0.75평에 1명 수용

7동 상4방은 약 2.75평에 7명 수용

9동 27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약 4평에 15명 수용

■ 원주 교도소 1상동은 약 4.5평에 17명 수용

2동 상11방은 약 2.8평에 8명 수용

3동 6방은 약 4.05평에 15명 수용

3동 10방은 약 2.38평에 15명 수용

4하동 6방은 약 4평에 13명 수용

5동 22방은 약 1.06평에 1명 수용

혼거방은 약 7평에 13명 수용

■ 육군 교도소 2동 505방은 약 3평에 1명 수용

2중대 독거방은 약 1.5평에 1명 수용

■ 의정부 교도소 3동 하방은 약 3평에 12명 수용

6동 6방은 약 4.7평이었고 12명 정도 수용

6상 3방은 약 3.3평이었고 12명 정도 수용

7동 2방은 약 1.5평에 1명 수용

7동 5방은 약 4.5평에 19명 수용

■ 인천 교도소 6동 독방은 약 0.75평에 1~2명 수용

■ 장흥 교도소 1동 3방은 약 1.2평에 3~4명 수용, 공안 독거방

2상동 5방은 약 4.2평에 16명 수용

■ 전주 교도소 1동 16방은 약 4.5평에 16명 수용

2동 24방은 0.79평에 1명 수용

3동 12방은 약 1.25평에 3명 수용

5동 12방은 약 4.3평에 12명 수용

6동 10방은 약 4.70평에 1명 수용

나동 19방은 0.75평에 1명 수용

나동 18방은 4.52평에 18~17명 수용

병사 7동은 약 3.40평에 1명 수용

병상동 6방은 약 3.75평에 1명 수용

병상 8방은 약 1.6평에 1명 수용

약 4평에 12명 수용

■ 제주 교도소 1동 7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5동 상4방은 12명 정도 수용

■ 진주 교도소 1동 13방은 약 1.07평에 1명 수용

3—중 19방은 약 1.5평에 3명 수용

3—중동 20방은 약 1.5평에 3명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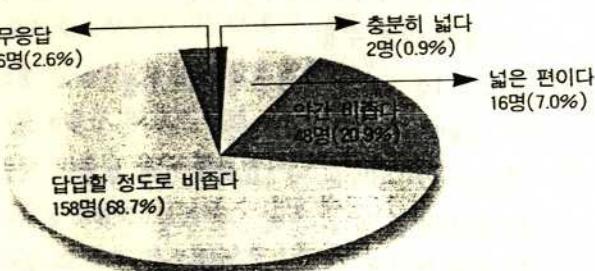
■ 천안 소년 교도소 6동 1방은 1.44평에 1명 수용

■ 천안 소년 구치소 6동 1방은 약 1.4평에 1명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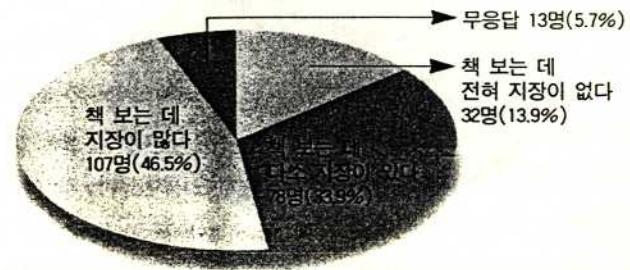
■ 청송 감호소 3동 3방은 약 3.2평에 7명 수용

- 3동 5방은 약 1.5평에 3명 수용
 4동 24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5동 3방은 약 2평에 5명 수용
 5동 12방은 약 3평에 7명 수용
 2.75평에 8명 수용
 1.5평에 5명 수용, 약 1평에 3명 수용
 각 동은 약 3.45평에 8명 수용
 약 1.7평에 7명 수용
- 청송 교도소 1동 7방은 약 2평에 5명 수용
 7동 3방은 약 0.75평에 1명 수용
 8동 4방은 약 1.3평에 4명 수용
- 청주 여자 교도소 3동 8방은 약 1.7평에 4명 수용
- 춘천 교도소 2사상층 12방은 약 2.3평에 8명 수용
 4동 13방은 약 1평에 1명 수용
 4동 13방은 약 1.07평에 1명 수용
 여자 5동은 약 4.4평에 14명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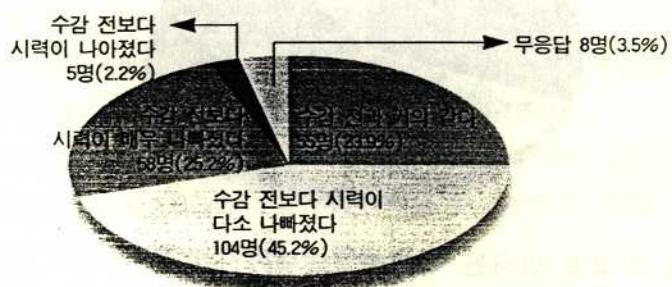
2. 감방의 넓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전깃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감방의 밝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4. 감방 전깃불 밝기가 몇 와트(족)였는지요? 그리고 당신의 시력은 수감생활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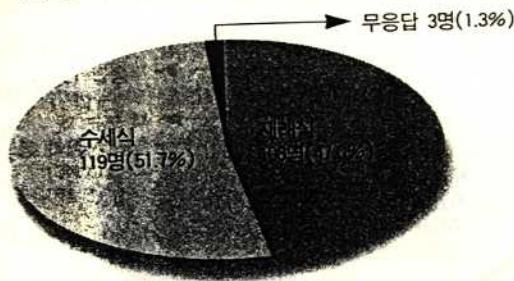


■ 밝기—30와트(20명)/60와트(17명)/20와트(15명)/15와트(5명)/10와트(3명)/40와트(3명)/50와트(2명)/120와트(1명)/형광등(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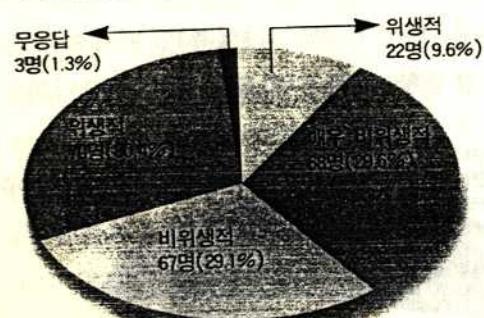
5. 감방의 환기상태는 어땠하였습니까?

- | Response | Count | Percentage |
|------------------------|-------|------------|
| ① 환기가 잘 되어 공기가 맑았다 | 16명 | 6.97% |
| ② 보통이다 | 95명 | 41.3% |
| ③ 환기가 되지 않아 실내 공기가 탁했다 | 114명 | 49.56% |
| ④ 무응답 | 5명 | 2.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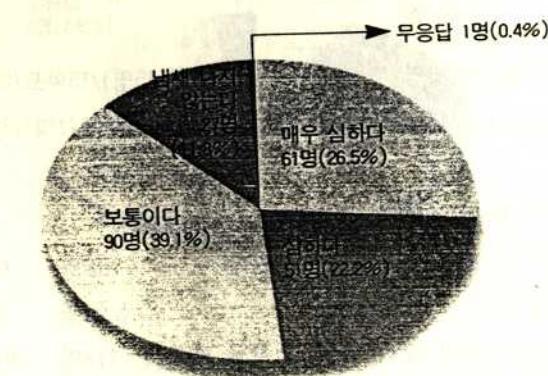
6. 감방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세식이었습니까?



7. 감방 화장실은 위생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 화장실 냄새는 어땠습니까?



9. 그밖에 화장실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 비위생(40명)

극도로 불쾌함. 화장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못 신어서 발이 붓는 등 비위생적/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혀 차오르고 비위생/화장실이 매우 비위생적이고 막히는 일이 많았고 거기에 대책이 없었다/변기물을 나오게 하고 넓혀야 한다. 화장실은 수세식이지만 물을 부어야 용변이 내려가 재소자의 성격에 따라 청결 정도가 다르다/물이 잘 빠지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펴내야 함/폭우가 오면 넘쳐 방안에 들어옴/제때에 펴주지 않음. 청소차가 일주일에 한 번 옴/벌레가 나옴(구더기, 이불에 벌레가 기어다님)/쥐가 나옴(똥 묻은 쥐가 방안을 휙젓고 다님)

■ 수세식으로 개선(25명)

■ 너무 좁다(세면과 목욕, 세탁 겸용으로 더욱 좁음)(22명)

■ 화장실이 개방되어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수치감, 모멸감(16명)

■ 세면, 설거지, 용변 등을 함께 하므로 불결, 곤욕(15명)

악취/화장실과 세면, 설거지 등을 모두 한곳에서 해야 하므로 매우 사용하기 곤욕스러움/화장실이 매우 작고 또 그곳에서 걸레도 빨아야 하기 때문에 오물이 될 정도로 불결

■ 악취(14명)

화장실 문이 없어/뚜껑이 없어 더욱 심함/심한 악취로 피부질환과 머리카락이 빠짐/제때 푸지 않아 더욱 심함/뚜껑 대신 비닐로 덮여져 있음/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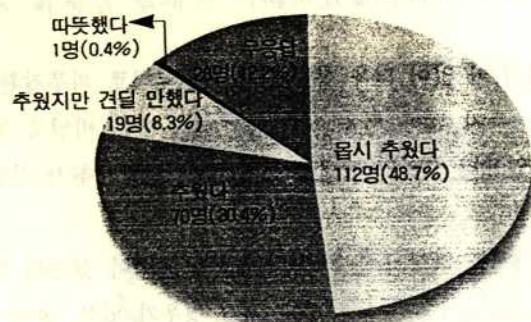
■ 물 부족(6명)

수세식 물 내리는 장치를 없애고 물을 떠다가 부어야 했는데 불편하고 물도 부족하기 일쑤임/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물이 안 나와 용변을 본 후 받은 물을 붓는다/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변기 통이 넘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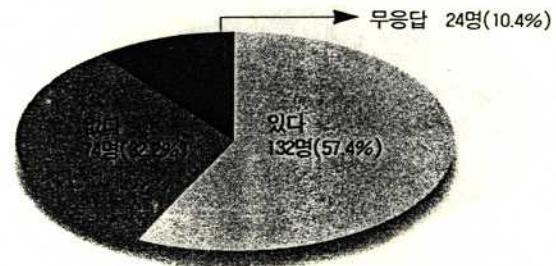
■ 기타

환기가 너무 안됨(3명)/비인간적이다(여기 생활하는 사람이 인간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3명)/세면시설이 있어야 한다(수도꼭지라도 있어야)(3명)/소독의 정기화(2명)/샤워를 하도록 허용/녹슨 철제 변기/소변 통은 안에 있지만 대변시에는 현병에게 보고하여 밖에 나가야 함/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태양열 분뇨 처리해야/먼지투성/수거식의 뜻을 거름으로, 오염/화장실 수도시설과 공간 확대/안양교도소 화장실 구조상 3~4일씩 못하고 다른 방으로 감/수거식으로 자주 펴야/재료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재소자들이 노력을 해서 재료를 구하고 연구하여 반 수세식 정도 되는 구조의 화장실을 설치, 사용하기에 8년 전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짐.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대전은 화장실을 볼 때 물을 틀어놓고 대변을 봄/수돗물이 나오면 매우 청결하다/수세식인데 물이 나오지 않음/화장실 개선 요망/조금은 좋은 편이다/화장실 정화시설의 부족 또는 구조 잘못으로 환경오염이 심함/정화조 시설 필요/똥차 소음문제

10. 겨울 감방 온도는 어떤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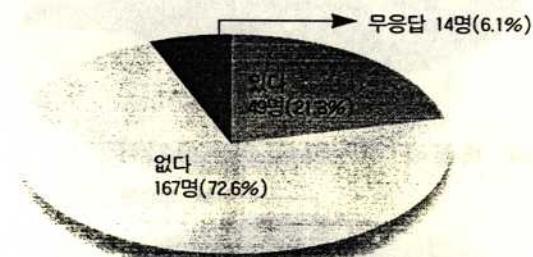


11. 당신은 동상에 걸린 일이 있습니까?



■ 있다면 부위는?—발(114명)/귀(63명)/손(47명)/다리(3명)/코(3명)/얼굴, 뺨(3명)/눈꺼풀(1명)/무릎(1명)

12. 감방에 난방 시설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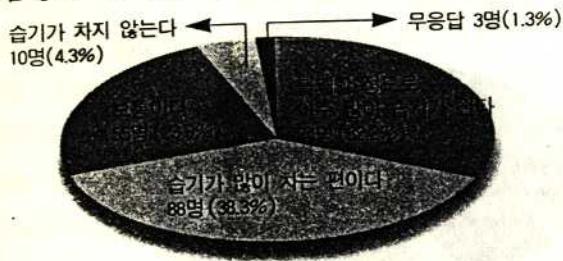
13. 사동 복도의 난방 수단은 무엇이었으며, 몇 개나 있었습니까?

- | | | |
|--------|------|-------|
| ① 스텁 | 16명 | 7.0% |
| ② 석유난로 | 9명 | 3.9% |
| ③ 연탄난로 | 170명 | 73.9% |
| ④ 무응답 | 35명 | 1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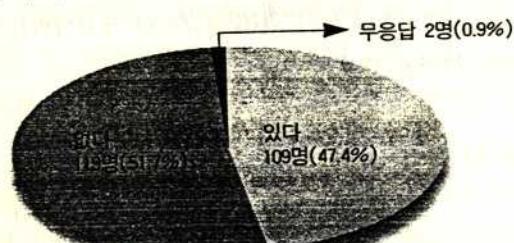
■ 석유난로—1개(6명)/2개(3명)

연탄난로—1개(60명)/2개(84명)/3개(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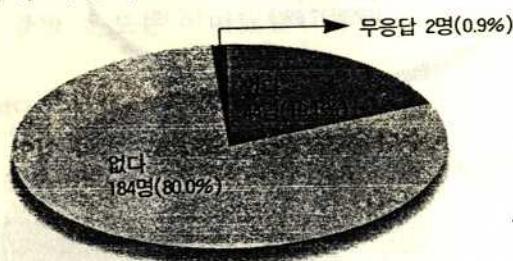
14. 감방에 습기가 찹니까?



15. 감방에 수도시설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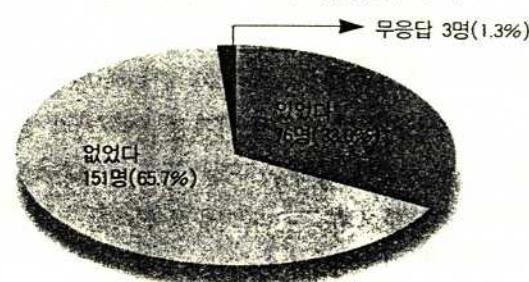
16. 감방에 책상이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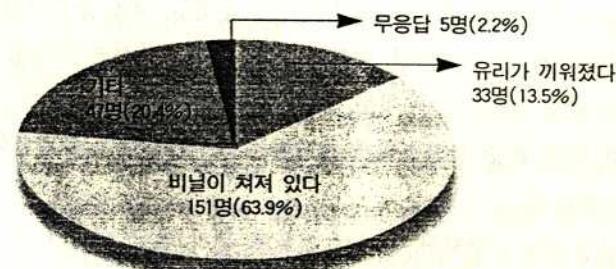
17. 감방에 거울이 있었습니까?

- | Response | Count | Percentage |
|----------|-------|------------|
| ① 있다 | 119명 | 51.7% |
| ② 없다 | 106명 | 46.1% |
| ③ 무응답 | 5명 | 2.2% |

18. 수감생활 중 시계를 볼 수 있었습니까?



19. 감방의 모든 창문에 유리가 끼워졌습니까. 아니면 비닐이 쳐졌습니까?(복수응답)



■ 기타—아크릴판(32명)/플라스틱(24명)

20. 그밖에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 화장실 및 수도시설

수세식으로 교체되고 물 사용이 가능해야(2명)/수도가 있었으면 좋겠다(2명)/화장실이 엉망이다(2명)/너무나 저질이었다. 특히 수도시설 면에서/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하고 세탁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사방에 수도시설도 해놓지 않고 재소자들에게 위생과 건강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다/수세식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재

래식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너무 좁다/난방, 거실수도, 수세식 변기 등이 있으나 고장 및 훼손으로 사용불가/세수, 목욕시설이 인간이하/화장실 위생 개선/목욕탕에서 샤워가 가능해야/화장실 이용시 밖에서 볼 수 있다/수도시설이 없어서 역겨운 상태/악취 냄새가 난다/방안에 수도가 없어 청결에 어려움/목욕탕에는 욕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망이 쳐 있음/물이 부족하다/겨울철에 더운 물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화장실이 좁고 불결하다/화장실 맨 아래칸 창문만이 라도 개폐식으로 만들어주어야

■ 수용 인원과 감방 크기

면적에 비하여 인원이 너무 많아 모든 면에서 불편이 많았다(8명)/여름에 혼거실의 경우는 고의로 수용 인원을 대폭 증가시켜 잠자기에도 불편하게 만든다/97년 여름 의정부 교도소에서는 수도공사를 했었는데 평상시에는 12명 정도 있던 방에 18~20명씩 들어간 적도 있고 그런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무척 불쾌했다

■ 난방시설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겨울엔 몹시 춥고 습기가 많이 찬다/겨울의 철 난방과 여름철 선풍기는 꼭 있었으면 한다/여름에는 더위. 겨울의 추위/겨울 난방이 형편 없음/난방상태가 나쁨/동상 예방을 위한 대책 필요/겨울에 수용시설이 너무 불편하여 출소한 지금까지 허리와 어깨 근육통으로 고생하고 있고 거실이 차가워 하루빨리 난방이나 기타 난방수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방바닥이 친데 겨울에도 깔판을 깔지 못하게 한다/겨울생활은 특히 열악하다/냉온방시설을 설치해야/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 특히 여름에는 참기가 힘들어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선풍기 정도는 달아주는 게 순리인 것 같다/여름엔 냉방시설 부재와 칼집 등으로 감방생활이 수치스럽고 힘들다

■ 소등

취침중에 불을 끄지 않아 잠이 안온다/전깃불이 24시간 내내 켜 있음

/취침 전 불이 어두워 책을 볼 수 없다

■ 운동 및 오락

운동시간을 연장해야(2명)/운동시설이 부족하고, 운동장이 비좁음/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다/제주 교도소 미결수용자는 운동장이 너무나 작아 운동하기가 불편하였다/7~8평 규모의 건물 내에서 10명이 운동/텔레비전 시청 1주일에 한 시간 정도/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으면 한다

■ 도서관

도서관 운영이 형편없다

■ 감방 내 시설

건조대가 필요하다(4명)/마루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냉기가 건강에 치명적/철창 간격이 너무 좁아 정서상 좋지 않았다/환풍이 안 좋아서 기관지 장애, 기온의 차이에 따른 건강 악화/영등포 구치소는 비가 오면 물이 새 천장에 비닐을 치고 물이 고이면 빼내야 했다/마루가 썩었고, 벌레가 많아서 몸에 벌레자국이 많았고, 물을 쓸 수 없었고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었다/마루에 먼지가 많고 구석구석의 시멘트 마무리가 잘되어 있지 않음/복도가 비좁아서 식사를 운반하기 힘들/햇빛이 잘 들지 않음/비닐창에 구멍이 나도 때워주지 않고 창틀이 제대로 아귀가 맞지 않아 겨울에 혹독한 추위/벌레가 많고 마룻바닥이 매우 부실/시멘트가 헐어 먼지가 많고 감방 문을 열고 닫을 때 큰 소음이 일어나며 페인트 색이 어두워 침침하다/시설이 너무 불편해서 생활 자체가 불편했다/창문이 높고 작아서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음/벽에 곰팡이가 심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샌다/마룻바닥이 통풍이 잘 안되어 항상 이불이 축축/벽지가 더러울 때 교도소 측에서 바꾸어주지 않아서 수감생활자가 편지지와 밥풀로 직접 도배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너무 지저분해서 생활할 수 없다/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 구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빗, 세면도구)는 물품구입이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마스크를 살 수 있어야/구매 물품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 소내 처우

편의시설을 몇 군데 설치하여 재소자들이 정서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검방이라는 것을 자주 하여 모욕적으로 모든 사물을 조사함/정치사범과 일반사범의 혼거는 부당/교화를 담당하는 전문 상담자가 있어야 한다. 밥만 먹고 시간만 보내기 일쑤다/비록 죄를 짓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교화, 보안이라는 이유로 소내 분위기를 삭막하게 한다/24시간 폐쇄회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감옥에서 지내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렸다

■ 위생

목욕시간을 연장해야 한다(4명)/위생이 엉망이다(4명)/음식에 약을 넣은 것 같다/담요가 너무 낡고 비위생적이다/물이 오염된다고 샴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가려움증까지 생겨 종기가 날 정도/면도기가 있으면 좋겠다/빗을 지급해야 한다

■ 의료 관련

몸이 불편할 때에는 수시로 의무과에 갈 수 있었다/피부병으로 재소자가 고생/의약품 때문에 고민했다

■ 기타

너무 엉망이다(3명)/수용생활이 불편했다/시력이 많이 나빠짐/전면적으로 APT 형태로 재시공하여야 함/개인 사물함이 필요/성기의 퇴화로 부부관계가 어렵다/국가 예산의 증대가 필요/너무나 미흡하고 눈 가지고 아옹하는 정장님께, 교정국장님 오신 날은 외부에서 잠깐 가져와 비치하는 식으로 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때만 외부인사들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식으로 하는 옛 구습을 벗었으면 좋겠다/대개의

재소자가 접견 와서 차입해주는 물품이 감방에 와서 확인하면 숫자가 많이 틀린다/공주 치료 감호소에도 교육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5장 신체 위생

1. 당신은 목욕 혹은 샤워를 며칠마다 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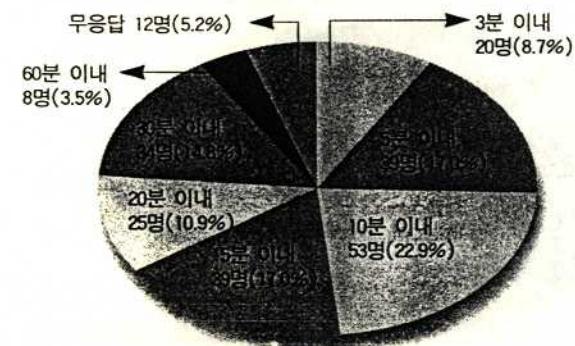
	명	비율(%)
수시로	2	0.9
매일	133	57.8
이틀	6	2.6
3일	5	2.2
5일	2	0.9
일주일	34	14.8
9일	48	20.9

〈여름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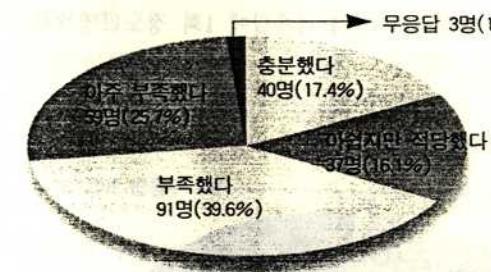
	명	비율(%)
매일	15	6.5
이틀	1	0.4
3일	4	1.7
6일	1	0.4
일주일	169	73.5
9일	36	15.7
보름	1	0.4
한달	3	1.3

〈겨울의 경우〉

2. 목욕 혹은 샤워는 몇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3. 목욕 혹은 샤워를 할 때 물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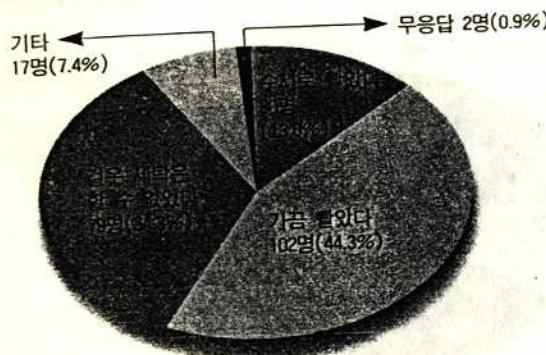


4. 속옷은 얼마나 자주 빨 수 있습니까?

- | | | |
|-----------|------|-------|
| ① 수시로 빨았다 | 126명 | 54.8% |
| ② 일주일에 1회 | 60명 | 26.1% |
| ③ 일주일에 2회 | 30명 | 13.0% |
| ④ 기타 | 13명 | 5.7% |
| ⑤ 무응답 | 1명 | 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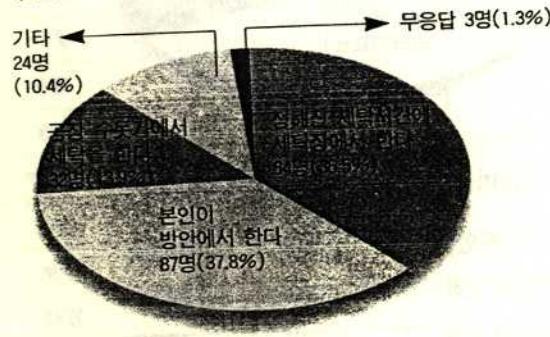
■ 기타—목욕, 샤워 시간에(4명)/일주일에 3회(3명)/2일에 1회(2명)/구입해 입음(1명)/모아서 한번에(1명)/생각날 때마다(1명)/재주껏(1명)

5. 걸옷(수인복)은 얼마나 자주 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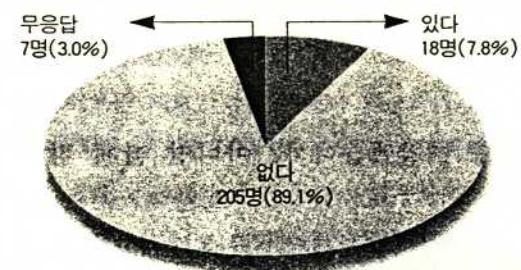
■ 기타—한달에 1번(3명)/2주에 1번(2명)/딱 한번(2명)/1주에 1번(1명)/3개월에 2번(1명)/여름에는 3주에 1번 겨울에는 2달에 1번(1명)/거의 할 수 없었다(1명)/3~4개월에 1회 정도(1명)/갈아입고 뺄 여유가 없다(1명)

6. 세탁은 어디서 했습니까?



■ 기타—사동세면장(12명)/화장실(5명)/목욕시간에(3명)/세탁장에서(2명)/본인의 방안에서 정해진 시간에(1명)/3가지 모두 해당(1명)/수시로(1명)/정해진 세탁 시간이 있었지만 부족하여 방안에서 어렵게 세탁하고 행금만 세탁장에서 했다(1명)

7.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8. 침구(이불, 모포, 침낭)를 자주 햅볕에 말릴 수 있습니까?

- | 선택 | Count | Percentage |
|-----------------|-------|------------|
| ① 언제든지 말릴 수 있었다 | 24명 | 10.4% |
| ② 일주일에 1회 | 108명 | 47.0% |
| ③ 2주일에 1회 | 46명 | 20.0% |
| ④ 말릴 수 없었다 | 26명 | 11.3% |
| ⑤ 기타 | 21명 | 9.1% |
| ⑥ 무응답 | 5명 | 2.2% |

■ 기타—1개월에 1회(12명)/어쩌다가(2명)/1주 2회(2명)/교도관 기분에 따라(1명)/10일에 1회(1명)/2주에 약 3회 정도(1명)

9. 이발은 며칠마다 할 수 있습니까?

- | 선택 | Count | Percentage |
|----------|-------|------------|
| ① 언제든지 | 18명 | 7.8% |
| ② 2주에 1회 | 72명 | 31.3% |
| ③ 1달에 1회 | 93명 | 40.4% |
| ④ 기타 | 40명 | 17.4% |
| ⑤ 무응답 | 7명 | 3.0% |

■ 기타—1주에 1회(12명)/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수형자가 많아 많이 기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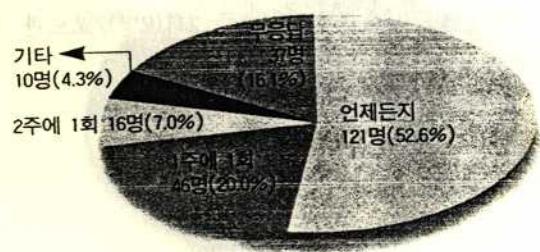
야 했다(1명)/담당교도관 뜻대로(1명)/3주 1회(1명)/2달 1회(1명)/교도관이 지적하였다(1명)/매주 이발사가 오지만 한 방에 1~2명 정도만 가능했다(1명)

10. 머리는 자유롭게 조발했습니까? 아니면 짧게 깎아야 했습니까?



■ 짧게 깎은 경우 앞머리의 길이는—1cm(1명)/2cm(6명)/3cm(28명)/4cm(4명)/5cm(20명)/7cm(1명)/10cm(2명)/스포츠(2명)/삭발(1명)

11. 면도는 며칠마다 할 수 있었습니까?



12. 수염을 기를 수 있었습니까?

- | | | |
|-----------------------|------|-------|
| ① 수염은 기를 수 없었고 밀어야 했다 | 126명 | 54.8% |
| ②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를 수 있었다 | 50명 | 21.7% |
| ③ 무응답 | 54명 | 23.5% |

13. 그밖에 신체 위생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 의료와 관련하여(6명)

이빨이 아프면 치료가 4달 후에나 가능하다/의약품 지급이 부실/의무과 시설 확충이 필요/피부병, 전염성 환자와의 격리 필요/아플 때 외면하고 제때 치료해주지 않음/감염환자와의 격리가 필요하다(의무과에서 C형 간염을 선고 받았는데 함께 지냄)

■ 물이 부족하다(5명)

급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많은 인원이 한 방에서 세면을 하려면 몹시 불편했다/사방에는 물이 부족하여 샤워 및 빨래, 설거지에 애로가 많다.

■ 목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23명)

일주일에 샤워 한 번, 공안수의 경우 목욕실에 가지 못하고 물을 가져다 쓰므로 시간 제약은 없으나 일반수는 온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샤워하는 정도/목욕할 때 물과 시간 부족으로 모멸감을 느낌/목욕·머리 감는 데 4일에 한 번, 목욕시간이 30분은 보장되어야 함/1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고 두 번 목욕을 함/목욕장 안이 너무 춥고 인원이 많고 온수에서 냄새가 나거나 때가 남아 있다/목욕과 샤워를 자주 할 수 있어야/목욕이 수시로 가능해야/겨울에도 1일 1회 정도는 샤워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겨울철엔 주 1회 목욕이 있으나 시간이 짧아서 샤워만 가능했다/뒷물이 부족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여성)

■ 세탁과 의복 등에 관한 어려움(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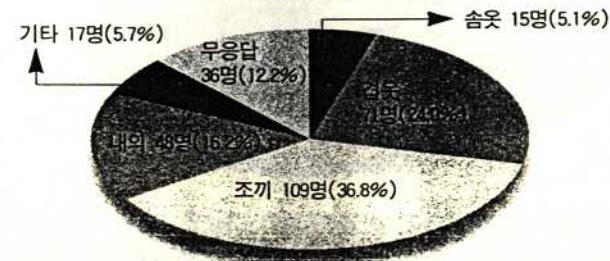
물 사용이 불편하고 세탁 불가능/의복 및 침구 양의 제한으로 건조 등이 불가능/속옷을 삼을 수 없어 비위생적/빨래 건조의 어려움/베개가 없어서 이불로 대체/세탁이 정기적이지 못해 비위생적/겉옷의 여벌이 없어 세탁이 힘들

■ 기타

겨울철 온수 지급 필요(3명)/벌레가 많다(약을 쳐주지 않음. 화장실에서 벌레가 많이 나옴)(2명)/청결 필요(위생 제로지대와 같다)(2명)/피부병 발생(물이 비위생적이라서, 습기가 많아서)(2명)/샴푸 구매가 금지되었음(2명)/세면시설이 많이 있어야겠고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2명)/여자의 이발도 가능해야(2명)/손발톱을 깎기가 어려움/햇빛을 볼 기회가 없음/전기면도기 구매가 가능해야/짐승 대우/출역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비누 공급 불량/말하고 싶지 않다/실내에 수도시설 완공/귀지 청소가 불가능하였고 바닥의 먼지로 인한 치질로 고생/여름에는 화장실이 자주 넘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얼음이 안다/수도시설이 없어서 불쾌함, 특히 여성의 경우 청결적인 위생이 필요/일회성 면도기의 사용으로 위생적인 수감생활 보장해주어야/전주 교도소는 조명, 소음, 쓰레기 소각 등의 문제가 심각

제6장 의류 및 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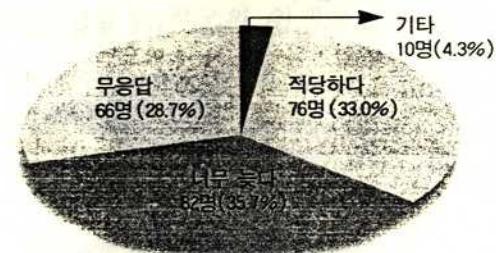
1. 겨울에 어떤 옷이 지급됩니까?(복수 응답)



2. 관에서 지급되는 옷으로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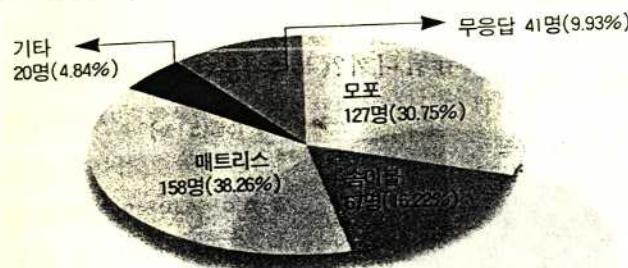
① 너무 얇아서 몹시 춥다	148명	64.3%
② 약간 춥다	48명	20.9%
③ 적당하다	8명	3.5%
④ 거추장스럽고 덥다	0명	0%
⑤ 무응답	26명	11.3%

3. 겨울옷은 언제 지급되며, 그 시기는 적당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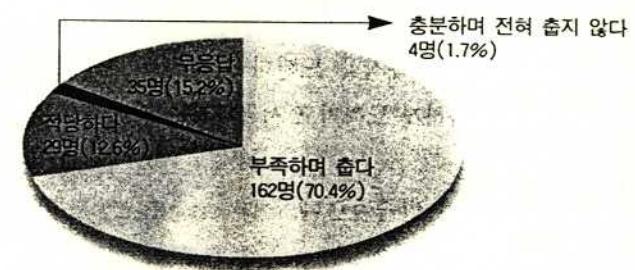
■ 지급 시기—10월(45명)/11월(65명)/12월(32명)/1월(2명)/9월(1명)

4. 겨울에 어떤 침구가 지급됩니까?(복수응답)



■ 기타—우량수 외에는 침구 지급 안됨/1, 2급만 이불 지급, 안양의 경우 솜이불은 지급 안됨/1급 우량수에 한해 지급됨. 약간 부족함을 느낀다. 영동포, 군산은 지급되지 않고 개인 구매시 사용 가능. 일반적으로 1인 3장, 2인당 1.5장 정도, 18명에 13장, 15명 기준 12장/관에서 지급되는 모포가 몇 장인지는 모름/독거실에는 솜이불, 매트리스 각 1장씩 주어짐/혼거방에 일정 구비된 매트리스와 방 전체의 7할을 깔 수 있는 같은 양의 모포/관에서 지급되는 침구로는 잠을 잘 수 없는 정도이며, 밖에서 가족이 사담요를 넣어주는 것으로 덮고 잔다/모포 정도이며, 밖에서 가족이 사담요를 넣어주는 것으로 덮고 잔다/모포는 개인 걸로 지급은 없었고 매트리스만 1개방에 8장씩 지급됨/모포는 개인 걸로 쓰며, 관 모포는 잘 쓰지 않는다/사담요가 있어 이불은 충분하다/침낭/독거실의 경우, 솜이불이 지급되며 모포도 여러 장 사용 가능/개별적으로 담요 2~3장 구입/영치되어 하나 들어오면 있던 관 모포는 별남/모포는 관계는 안쓰고 사제만 쓴다/너무 낡은데 구입을 안하면 지급 안됨/일반수는 3인 2장인데 김천은 이것도 부족/베개 및 솜이불은 정치범만 1인 1장/지급되지 않아 사서 쓴다/천안은 솜이불이 지급 안됨

5. 겨울용 침구로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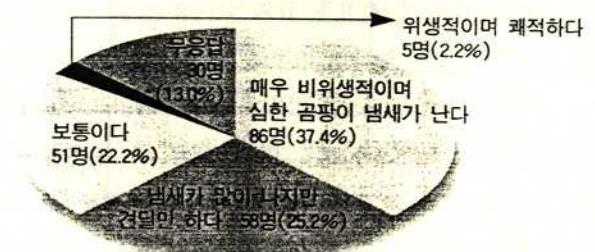


6. 겨울용 침구는 언제 지급되며, 그 시기는 적당합니까?



■ 지급 시기—10월(29명)/11월(63명)/12월(39명)/1월(1명)

7. 지급되는 겨울용 침구의 위생상태는 어떠합니까?



8. 당신은 관에서 지급되는 수인복(하복, 춘추복, 동복)을 입으면서 어떤 기분입니까?

① 몹시 치욕스럽고 굴욕감을 느낀다	81명	35.2%
② 약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서글퍼지는 정도다	97명	42.2%
③ 그저 텁텁하다	40명	17.4%
④ 웃이 잘 만들어져 만족스럽다	3명	1.3%
⑤ 무응답	9명	3.9%

9. 수감생활중 개인 모포는 몇 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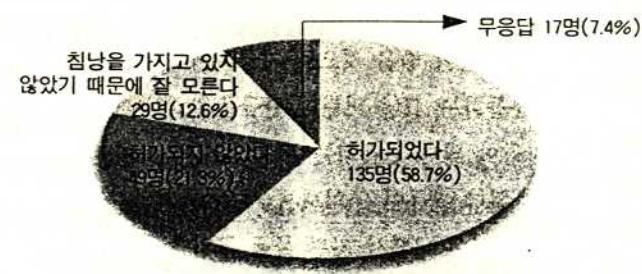
	명	비율(%)
없음	2	0.9
1장	45	19.6
2장	67	29.1
3장	40	17.4
4장	5	2.2
무응답	71	30.9

<여름의 경우>

<겨울의 경우>

	명	비율(%)
없음	1	0.4
1장	15	6.5
2장	59	25.7
3장	81	35.2
4장	18	7.8
5장	8	3.5
6장	1	0.4
무응답	47	20.4

10. 수감생활중 침낭의 보유가 허가되었습니까?



11. 관급 혹은 자변 침구와 의류에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34명)

먼지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기관지 악화/수의와 침구 세탁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매트리스가 너무 지저분하다/악취가 심하다(곰팡이 냄새 때문에 늘 괴로웠다)

■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해야 한다(22명)

모포는 여러 별로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무겁기만 한데 겨울에는 솜이불을 지급했으면 한다/추위 방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질병에 시달림/자변으로 구입되는 것이 많아야—추위 방지를 위하여/겨울용 침구 지급되지 않음/솜이불 지급 필요/난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감기와 동상에 시달림/이불의 차입이 가능해야/침낭이 너무 얇았다

■ 환기나 건조, 세탁이 불가능(22명)

침구와 의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탁하여 교체해주어야 한다/관복은 세탁을 위한 여벌이 필요하다/침구는 자주 세탁해주어야 한다/관복의 여벌이 없어 비위생적이다. 청결 유지를 위해 현 1벌에서 2벌 이상 지급해야 한다/세탁이 불가능했다/정기적으로 침구와 의류를 교체해야 한다

■ 관에서 지급되는 관복, 담요의 질이 나쁘다(9명)

관에서 지급되는 의류 및 신발은 질이 나빠 한 번 사용 후 버린다/1년에 한 번은 주더라도 질이 좋은 것으로 지급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였으면 한다. 특히 운동화는 그냥 버린다/관급품은 너무 부족하고 자연물품은 없는 사람들이 많다/관급되는 모든 침구와 의류가 몹시 부실하여 자변을 하게 된다/관품이 조악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옷이 조잡하고 관급의 질이 나빠서 자변 물품 구입을 유발시킨다

■ 옷이 몸에 맞지 않게 지급된다(이후 교체도 힘들다)(8명)

■ 관에서 지급되는 관복, 담요 수량이 너무 적다(7명)

관에서 지급되는 담요 수량이 너무 적어 자변 침구가 없는 재소자들은 무척 고생을 한다/자변 구입을 유발시킨다/매트리스가 사람 수에 맞추어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엔 부족하여 일부 수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

■ 자변 침구와 의류 수의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5명)

자변되는 것도 허가원칙이 까다로워 원칙대로 하면 수량을 늘리는 것 이 통제된다/규정상 불허 규정이 애매하다/침구 구매 시기가 정해져 있어 그때가 지나면 구매 불가능하다/개인침구는 특별히 더 허가해 주었으면 한다

■ 계절에 따른 관복의 지급이 필요하다(4명)

■ 자변 침구의 구입은 잘못이다(자변 구입을 허용하므로 재소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4명)

■ 출소자의 자변을 타 재소자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2명)

출소자가 재소자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힘들

■ 관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2명)

■ 미결상태에서의 관복착용은 인권에 배치된다(간편한 사복착용 가능해야 한다)(2명)

■ 관급 침구의 관리가 소홀하다(2명)

■ 침구류는 많이 충분했다(2명)

■ 너무 낡았다(3명)

■ 기타

속옷, 내의 등이 형식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옷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엔 출소자가 버린 것 사용한다/검사 받고 자변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관복 수의 제한으로 바꾸어 입거나 겨울을 수 없다/남은 담요를 양로원에 갖다 주기로 했는데 관측에서 약속을 파기했다/영치된 자변 의류를 찾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영치품 보관이 엉망이다/내의가 지급되지 않았다/침구 보유 규정이 까다롭다(1인 2개)/디자인이 엉망이다/없는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은 또 많이 가지고 있다/인원과 공간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자변 의류를 관급 수의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자변하도록 하여 관급 수의의 불량을 유발하고 납품업체와의 비리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침낭의 질을 높이면서 값을 낮추어야 한다/겨울옷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주머니를 만들어야 한다/관에서 모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자변하는 데 시기가 지나면 강제로 걷어가서 들려주지 않아 재구매해야 한다/미지정 4급수는 관급만으로 생활할 수 없고 다 자변하여 생활해야 하므로 고생이 더욱 심하다/반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해했다/이 감시 모포를 받아주지 않았다.